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11. 26 선고 2024가단220289 판결 [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

담당변호사 정병욱

피고1. C

2. D

3. E

4. F

변론 종결2024. 11. 12.

판결 선고2024. 11. 26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38,913,030원 및 그 중 1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4. 1. 13.부터, 그 중 37,913,030원에 대하여는 2024. 1. 18.부터 2024. 6. 25.까지는 연 5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피고 C, F에 대한 청구 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)
피고 D, E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안홍준

별지

- 1)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'소장 부분 송달일'은 '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'로 선택한다.